



등록번호: 20190341

최초 등록일: 2019.04.12.

최종 등록일: 2024.08.14.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주식회사 디케이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20

주식회사 디케이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의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대표 전화번호] 1522-1594 [대표 팩스번호] 061-336-6109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팀 1522-1594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디케이푸드	첨단돌솥감자탕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 6. 24.	2016. 8. 1.	김창수	1522-1594	061-336-6109
	법인등록번호	200111-0465588	사업자등록번호	518-86-0055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창수/(주)디케이푸드	첨단돌솥감자탕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창수	1522-1594	061-336-610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이사	김창수/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리팜	천리팜아쿠아포닉스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923-2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창수	061-336-6108	061-336-610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첨단돌솔감 자탕	첨단돌솔감 자탕	2016.06.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37(월계동)	김창수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첨단돌솔감자탕'이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첨단돌솔감자탕	
상 호	첨단돌솔감자탕 ○○점	
상 표 (서비스표)		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4-0002823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6,432,082	5,253,937	1,178,145	5,185,556	301,040	134,847
2022년	3,695,872	2,652,574	1,043,297	3,984,912	206,136	126,266
2021년	3,170,168	2,353,137	817,031	3,195,922	111,841	88,328

※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당사는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과 그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창수	대표이사	2016. 6. 24. ~ 현재	(주)디케이푸드 대표	사업 총괄
			2020.12.17. ~ 현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리팜 대표	사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기준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1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디케이푸드	가맹사업경영	2019.11. ~ 2022.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첨단한우국밥 (등록번호: 20200224)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대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리팜	가맹사업경영	2021. 01. 01. ~ 현재	천리팜아쿠아포닉스 (등록번호: 20220216)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③)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출원 2024.01.05. 등록 2024.05.24.	출원 40-2024-0002823 등록 40-2200154-0000	(주)디케이푸드	2034.05.24.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첨단돌솥감자탕'을 시작한 날 : 2015. 7. 30.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4. 9. 5)

2. '첨단돌솥감자탕' 연혁

가맹본부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첨단돌솥 감자탕	첨단돌솥 감자탕	김창수	2015. 7. 30. ~ 2016. 6. 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37 (월계동)
주식회사 디케이푸드	첨단돌솥 감자탕	김창수	2016. 6. 24. ~ 2020. 12. 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37 (월계동)
주식회사 디케이푸드	첨단돌솥 감자탕	김창수	2020. 12. 17. ~ 현재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3.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첨단돌솥감자탕	한식	감자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7	26	1	28	26	2	28	27	1
서울	-	-	-	-	-	-	-	-	-
부산	1	1	-	2	2	-	2	2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15	14	1	15	13	2	17	16	1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1	1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2	2	-	1	1	-	1	1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7	7	-	8	8	-	7	7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점 수

(단위: 개)

연 도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 말
2023년	26	3	0	2	9	27
2022년	26	2	2	0	0	26
2021년	22	8	1	3	3	26

6. '첨단돌솥감자탕'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본부	(주)디케이푸드	첨단한우국밥	20200224 *자진취소	한식	0/0	0/0	0/0
특수관계 인 (대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리팜/김창수	천리팜 아쿠아포닉스	20220216	농업	0/1	0/1	0/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매출액	3.3㎡당	3.3㎡당	3.3㎡당	3.3㎡당	3.3㎡당	
전체	27	462,802	11,271	942,546	24,029	132,331	3,374	
서울	-	해당없음	-	-	-	-	-	
부산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광주	16	486,076	13,558	942,546	24,029	132,331	6,412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	해당없음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7	446,138	9,802	614,219	12,478	224,382	4,392	
제주	-	해당없음	-	-	-	-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음]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7	1,451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점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	29,671	-	-	-
광고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광산우체국	광주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32	062-949-213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소정서식(별첨 1 '가맹금예치신청서' 참조)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가맹금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절차에 따라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위 2.항의 각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내역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시 (영업개시일에 받는 곳은 영업개시일)	영업 개시 이 전 까 지 계약 해지	영업 개시 前 : 이미 제공된 서비스(입지선정 정보제공 및 자문비, 상표·상호·로고·디자인·서비스표 등 사용료, 점포 유지 관리비, 광고 판촉비, 영업지역 보호비, 조리 교육실습 재료비, 각종 매뉴얼 제공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영업 개시 後 : 소멸성 비용 제외 후 정산하여 반환함

교육비	5,500	계약 체결시	교육 개시 이 전 까 지 계약 해지	교육 개시 前 : 전액 반환 교육 개시 後 : 반환하지 않음
-----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현금) 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 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21,500	21,500
가맹비	11,000	11,000
교육비	5,500	5,500
보증금	5,000	5,0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5.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115㎡)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19,350	3,410			
인테리어	지정하지 않음	69,300	1,980	가맹본부 시공 및 구입 시 : 인테리어, 간판, 주방기기 및 집기, 테이블 등의 비용에 대하여 시공 및 공급 1日 이전에 지급 감리비 지급 시 : 시 공 또는 상품 수령 즉시 지급	공사 전 계약 취소	115㎡기준 3.3㎡늘 어날 때마다 1,980 천원 추가부담
간판 및 사인물		4,400	-		설치 전 계약 취소	
의자, 책상		4,950	-		입고 전 계약 취소	
주방/홈설비 및 집기		33,000	942			
초도물품	가맹본부	7,700	-	상품 수령 후 즉시 전액 지급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로부터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이하 “감리”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당사는 귀하에게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감리를 받지 않고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당사의 직원 파견 및 감리에 대한 대가로 감리비{55만원(3.3㎡당 금액/vat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방기기 및 집기, 초도상품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가맹본부에서 시공 및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유선 방송, 각종 인 허가 등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 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결정을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2.2%	매월 15일			
광고 분담금		광고비의 50%	당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2쪽 참조

테이블오더기	(협력업체)	대당 15,950원X테이블수	계약시 지정			
포스		관리유지보수료 (월44,000원)	계약시 지정			
서빙로봇		월526,900원	계약시 지정			현장 상황에 따라 설치 여부 결정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165,000 /日	교육 실시 10일 이전			
지연이자		연 15%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 아껴주는 세무회계 062-953-3585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330,000원 (부가세 포함)의 재가맹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



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첨단돌솔감자탕’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 종료 후 ‘첨단돌솔감자탕’ 매뉴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또는 응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실행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시켜서도 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첨단돌술감자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 없음.

귀하가 [첨단돌솥감자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해당 없음.

1) 당사는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2) 당사가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감자탕, 뼈찜, 찜닭, 뼈해장국, 왕만두 등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수 없습니다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다른 가맹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뿌파(파김치) 감자탕	대(大)	47,000	포스 등 통신매체	
	중(中)	42,000	”	
	소(小)	37,000	”	
묵은지 감자탕	대(大)	44,000	”	
	중(中)	39,000	”	
	소(小)	34,000	”	
우거지 감자탕	대(大)	40,000	”	
	중(中)	35,000	”	
	소(小)	30,000	”	

현단 돌솥감자탕

매운 뼈찜	대(大)	44,000	”	
	중(中)	39,000	”	
	소(小)	34,000	”	
뼈찜	대(大)	40,000	”	
	중(中)	35,000	”	
	소(小)	30,000	”	
왕만두		5,000	”	
매콤주먹밥		4,000	”	
어린이주먹밥		3,500	”	
우거지 돌솥 뼈해장국		10,000	”	
묵은지 돌솥 뼈해장국		11,000	”	
뿌파 돌솥 뼈해장국		12,000	”	
감자탕 뼈 추가		14,000		
뿌파김치 추가		9,000		
묵은지 추가		7,000		
우거지추가		5,000		
볶음밥(2인이상)		2,000		
돌솥밥		2,000		
공기		1,000		
사리(라면, 당면, 수제비)		2,000		
복분자		10,000		
소주		5,000		
맥주		9,000		
막걸리		3,000		
음료수		2,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없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식사료를 포함한 감자탕, 찜 류의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첨단돌솥감자탕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1. 변경 사유 발생 2. 당사 검토 3.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4.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5. 가맹점사업자 동의 6. 영업지역 변경 완료	1. 영업지역 변경안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2.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첨단돌솥감자탕’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5	5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만료일 : D - day)

단계	순 서	기 간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 ②, 아니오 → 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 ④, 아니오 →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⑤, 아니오 →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C, 아니오 → 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 → B, 아니오 → 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 E, 아니오 → A	D-60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4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5호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2호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3호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5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6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7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8호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2항 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제41조 제2항 제2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제2항 제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 제2항 제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제5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제 ①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①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제6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 제2항 제7호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 제2항 제8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제2항 제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1.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2.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3. 가맹점사업자에게 승인 여부 통지 4.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5일 소요) 5.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당사와 협의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현 영업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시, 도 내에서] 귀하가 ‘첨단돌솔감자탕’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식사류를 포함한 감자탕, 찜류의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1.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2.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소요) 3. 허가 여부 통지 4. 완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첨단돌솔감자탕’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시간	영업 일수	비고
09:00 ~ 24:00 (14시간)	점주 자율 (다만, 귀하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휴무를 원할 경우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권장 종업원 수는 점주 포함임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취급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전반에 대해 점검 및 지도, 관리 및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기록하여 가맹본부가 보관토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첨단돌술감자탕’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전국광고	상품광고	50%	50% (전체 가맹점 안분)	1. 행사 계획 공고 2. 가맹점부담액 제시 3.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4.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 금 확정	지면광고 온라인
	가맹점 모집광고				
지역단위 광고	개별행사	-	100%	가맹점사업자의 자율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판촉	전국 및 지역별 판촉	50%	50%	1. 행사 계획 공고 2. 가맹점부담액 제시 3.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4.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 금 확정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개별행사	-	100%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60~67日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12~15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7~14日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 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 가맹금 예치 안내 ▷ 프랜차이즈 보증보험증권 제공 ▷ 가맹계약 체결	2日	
점포실측 및 도면 미팅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개점 스케줄링 확인	2日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45日	
교육 실시	▷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12日	
영업설비/집기 입고	▷ 냉장고 등 입고 ▷ 그릇 등 입고	2日	
초도물품 입고	▷ 유니폼 등 입고 ▷ 식자재 등 입고	1日	

그랜드 오픈	▷ 영업 시작 ▷ 판촉 및 홍보이벤트 ▷ 예치가맹금 수령 ▷ 프랜차이즈 보증보험증권 소멸	D-Day	
--------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양도·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



고 있지 않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 제공 등을 한 내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첨단돌솥감자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개점 前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그랜드 오픈 전	필수 교육
개점 後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연간 1회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첨단돌솥감자탕’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 시간	비 용	비 고
개점 前 교육	3 일	5,500,000	3일 초과시 165,000 / 日
개점 後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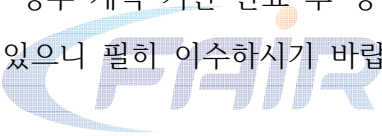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개점 前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점 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광주	도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50,102호.103호(도산동우진타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9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57,266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6개월 이상 운영한 직영점 pos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522-159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관은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필수공급상품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별첨 4]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5] 재무현황(2021년,2022년,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